

**TROUP COUNTY 교육청**  
**중학교 및 고등학교 출석 협약서**  
**결석, 지각, 조퇴**

조지아주 법에 따라 모든 연령의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수업에 빠진 학생은 교과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학업을 제때 마치지 못하고, 또한 성공적인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조지아 주 법령 "Georgia Compulsory Attendance Statute, O.C.G.A. and 20-2-690"에 따르면, 자녀의 등교를 태만히 하는 부모님 / 법적 가디언 (이하 책임자로 명명)은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Compulsory Attendance Statute"를 위반하여 유죄로 인정될 경우, 관할 법원은 재량으로 책임자에게 1 일 \$100.00 내의 벌금 부과 및/또는 30 일 이내 구속 할 수 있습니다. 매번 결석시 따로 벌칙이 부과 됩니다.

각 학교장은 교직원을 지정하여 이 협약서를 지킨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학생은 결석할 수도 있다..

- ✓ 학생의 질병으로, 등교시 자신 혹은 타인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음
- ✓ 학생의 직계가족 사망
- ✓ 학생의 종교와 관련된 휴일
- ✓ 학생의 건강 / 안전을 위협하거나 등교가 불가능한 조건(기상 악화등)
- ✓ 병원, 치과 약속 혹은 법원 출두로 그 해당하는 시간만큼
- ✓ 부모님 혹은 법적 가디언의 군대 일로 인해 결석이 불가피함
- ✓ 필요할 경우, 학생의 이름을 교육청 카운셀러, Family Assistant, 사회 복지사, 교부 관리자 또는 관계자에게 보낸다.

법령에 따라 부모님 또는 가디언은 자녀의 출석을 살펴야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당합니다.

아래와 같이 "Troup County 교육청 무단결석 협약서"를 시행한다:

1. 학년 초, 10 세 이상 아동의 책임자는 "Troup County Truancy Protocol"에 서명하고, 서명한 서류는 학교 파일에 보관한다.
2. 무단 결석 3 일, 사유 없는 지각 5 번 또는 조퇴 5 번일 경우, 학교는 책임자에게 전화, 서면 또는 직접 만나 학생의 상태 알린다. 연락한 기록을 학교 파일에 보관한다 (첫번째 경고장). 책임자와 컨퍼런스를 갖고 "무단 결석 통지문-Truancy Notice"을 보여주고, 여기에 서명하며 개선 방안을 세운다.
3. 무단 결석 5 일, 사유 없는 지각 7 번 또는 조퇴 7 번 이상의 경우, 학교는 책임자에게 경고장(2 번째)을 보내고, 무단 결석 통지문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책임자가 서명했는지 확인한다.
4. 이와같이 책임자에게 2 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이 없으면, 학교는 책임자/가디언에게 우편으로 "무단 결석 통지문"을 보내고 "배달 증명서"를 받는다. 경우에 따라 학생 이름을 학교 카운셀러, Family Assistant, 교육 행정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린다.
5. 학교 재량에 따른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두번째 경고가 있는 후 다시 "무단 결석, 지각 또는 조퇴"가 발생하면 사법당국에 연락을 취한다.
6. 6~16 세 아동의 책임자가 위를 무시하고 학생이 계속 결석하면, 학교는 사법당국에 연락하고 영장이 발부된다. 학기중 계속되는 무단결석으로 학업에 진척이 없으면, 학교는소년 법원에 책임자를 교육 기회 박탈죄로 고소한다.
7. 무단 결석 이 7 일이 넘으면 학교는 영장 발송 요구외에 교육 방치 또는 어린이 양육 태만으로 고발한다.
8. 출결과 관련된 사법 당국의 문서를 학교에서 받아 학교 파일에 보관한다.

---

부모/가디언/책임자 서명

---

날짜

---

학생 서명(10 세 또는 그 이상)

---

학년

학생 이름 정자체 \_\_\_\_\_

**Revised 08/19 Korean**